# 테넌바움294 Ⅰ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현장으로 샘플하우스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샘플하우스 관람 및 단지투어가 가능하며,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세대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변경될 경우 추후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샘플하우스 운영관련 안내

▶ 사전예약자 관람 접수

- 사전예약자 관람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테넌바움294.com)**를 통하여 사전예약
- 사전예약자 관람 접수 일정 :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사전예약자 샘플하우스 및 단지투어 관람은 본인 외 1인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샘플하우스 방문 시 유의사항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샘플하우스 방문 및 단지 투어 중 해당직원의 동행·동의 없이 동선을 이탈하는 경우
- 현장방문은 사전예약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오니 예약 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통제 및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안내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의로 인한 세대 설치된 기성품 파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임을 사칭한 외부 영업행위(인테리어, 입주청소, 부동산 등)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27. 사용승인을 득한 아파트이며, 샘플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개할 샘플하우스는 101동 502, 505호, 102동 501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필히 인지하시어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은 기시공되어 무상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공정 진행상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2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된 아파트이므로 기시공된 기본제공품목 등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넌바움294」분양 상담 전화(☎ 051-757-29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이상 , 예치금)<br>※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이상 ,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이상 ,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형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O | O | X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테넌바움294 **홈페이지(www.테넌바움294.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6개월 | 6개월 |

※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입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 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 「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과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
- 구매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02.05(월) | 2024.02.06(화) | 2024.02.07(수) | 2024.02.16(금) | 2024.02.22.(목) ~<br>2024.02.25.(일) | 02월 27일(화)<br>~ 02월 29일(목)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홍보관 방문<br>(10:00~16:00) | |
| 장 소 | ▪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br>-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br>- 문의 : 051-757-2940<br>※ 검수 접수건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민락동 테넌바움294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4626호(2024.01.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784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39층 2개동 총 294세대 중 '테넌바움 294' Ⅰ, 지상 2~25층 2개동, 일반분양 192세대(102세대는 테넌바움294 Ⅱ에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106세대(일반[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39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4000018 | 01 | 084.6239 | 84A | 84.6239 | 29.4118 | 114.0357 | 57.0834 | 171.1191 | 16.8973 | 120 | 13 | 12 | 24 | 4 | 11 | 64 | 56 | 5 |
| | | 02 | 084.6239A | 84A1 | 84.6239 | 29.4118 | 114.0357 | 57.0834 | 171.1191 | 16.8973 | 24 | 3 | 3 | 5 | 1 | 2 | 14 | 10 | 1 |
| | | 03 | 084.7540B | 84B | 84.7540 | 29.8782 | 114.6322 | 57.1710 | 171.8032 | 16.9233 | 24 | 3 | 3 | 5 | 1 | 2 | 14 | 10 | 1 |
| | | 04 | 084.8081C | 84C | 84.8081 | 29.4952 | 114.3033 | 57.2076 | 171.5109 | 16.9341 | 24 | 3 | 3 | 5 | 1 | 2 | 14 | 10 | 1 |
| | 합 계 | | | | | | | | | | 192 | 22 | 21 | 39 | 7 | 17 | 106 | 86 | 8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경비실, 관리사무소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사용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바 청약 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약식표기는 사용승인 상의 표시 방식임)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3세대(101동 502, 505호, 102동 501호) 입주는 2026년 01월부터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할모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본 공고 이외의 세대는 테넌바움294 Ⅱ에서 공급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원)

| 약식표기 | 동호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 | | | | 계약금(10%) | | 잔금(9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계약금 (계약 시) | 2차 계약금 (계약후 30일 이내) | |
| 84A | 101동 1호, 102동 1호, 2호, 3호, 5호 | 22~25 | 20 | 278,391,000 | 1,011,609,000 | - | 1,290,000,000 | 64,500,000 | 64,500,000 | 1,161,000,000 |
| | | 18~21 | 20 | 267,601,000 | 972,399,000 | - | 1,240,000,000 | 62,000,000 | 62,000,000 | 1,116,000,000 |
| | | 14~17 | 20 | 263,285,000 | 956,715,000 | - | 1,220,000,000 | 61,000,000 | 61,000,000 | 1,098,000,000 |
| | | 10~13 | 20 | 241,704,000 | 878,296,000 | - | 1,120,000,000 | 56,000,000 | 56,000,000 | 1,008,000,000 |
| | | 5~9 | 25 | 237,388,000 | 862,612,000 | - | 1,100,000,000 | 55,000,000 | 55,000,000 | 990,000,000 |
| | | 3~4 | 10 | 233,072,000 | 846,928,000 | - | 1,080,000,000 | 54,000,000 | 54,000,000 | 972,000,000 |
| | | 2 | 5 | 228,756,000 | 831,244,000 | - | 1,060,000,000 | 53,000,000 | 53,000,000 | 954,000,000 |
| 84A1 | 101동 2호 | 22~25 | 4 | 278,391,000 | 1,011,609,000 | - | 1,290,000,000 | 64,500,000 | 64,500,000 | 1,161,000,000 |
| | | 18~21 | 4 | 267,601,000 | 972,399,000 | - | 1,240,000,000 | 62,000,000 | 62,000,000 | 1,116,000,000 |
| | | 14~17 | 4 | 263,285,000 | 956,715,000 | - | 1,220,000,000 | 61,000,000 | 61,000,000 | 1,098,000,000 |
| | | 10~13 | 4 | 241,704,000 | 878,296,000 | - | 1,120,000,000 | 56,000,000 | 56,000,000 | 1,008,000,000 |
| | | 5~9 | 5 | 237,388,000 | 862,612,000 | - | 1,100,000,000 | 55,000,000 | 55,000,000 | 990,000,000 |
| | | 3~4 | 2 | 233,072,000 | 846,928,000 | - | 1,080,000,000 | 54,000,000 | 54,000,000 | 972,000,000 |
| | | 2 | 1 | 228,756,000 | 831,244,000 | - | 1,060,000,000 | 53,000,000 | 53,000,000 | 954,000,000 |
| 84B | 101동 3호 | 22~25 | 4 | 252,494,000 | 917,506,000 | - | 1,170,000,000 | 58,500,000 | 58,500,000 | 1,053,000,000 |
| | | 18~21 | 4 | 243,862,000 | 886,138,000 | - | 1,130,000,000 | 56,500,000 | 56,500,000 | 1,017,000,000 |
| | | 14~17 | 4 | 237,388,000 | 862,612,000 | - | 1,100,000,000 | 55,000,000 | 55,000,000 | 990,000,000 |
| | | 10~13 | 4 | 215,807,000 | 784,193,000 | - | 1,0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900,000,000 |
| | | 5~9 | 5 | 211,491,000 | 768,509,000 | - | 980,000,000 | 49,000,000 | 49,000,000 | 882,000,000 |
| | | 3~4 | 2 | 207,175,000 | 752,825,000 | - | 960,000,000 | 48,000,000 | 48,000,000 | 864,000,000 |
| | | 2 | 1 | 202,859,000 | 737,141,000 | - | 940,000,000 | 47,000,000 | 47,000,000 | 846,000,000 |
| 84C | 101동 5호 | 22~25 | 4 | 237,388,000 | 862,612,000 | - | 1,100,000,000 | 55,000,000 | 55,000,000 | 990,000,000 |
| | | 18~21 | 4 | 228,756,000 | 831,244,000 | - | 1,060,000,000 | 53,000,000 | 53,000,000 | 954,000,000 |
| | | 14~17 | 4 | 224,439,000 | 815,561,000 | - | 1,040,000,000 | 52,000,000 | 52,000,000 | 936,000,000 |
| | | 10~13 | 4 | 200,701,000 | 729,299,000 | - | 930,000,000 | 46,500,000 | 46,500,000 | 837,000,000 |
| | | 5~9 | 5 | 196,385,000 | 713,615,000 | - | 910,000,000 | 45,500,000 | 45,500,000 | 819,000,000 |
| | | 3~4 | 2 | 192,068,000 | 697,932,000 | - | 890,000,000 | 44,500,000 | 44,500,000 | 801,000,000 |
| | | 2 | 1 | 187,752,000 | 682,248,000 | - | 870,000,000 | 43,500,000 | 43,500,000 | 783,000,000 |

※ 본 주택은 사용승인 후 분양 단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기간 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분양대금 계약금을 납부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계약체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30일이 초과한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일정기간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101동 202,203,205호의 경우 타 세대와 마감자재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분양대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잔금에 대하여 입금일로부터 납부약정기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은 기시공 하였습니다.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 등에 대하여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 084.6239 | 084.6239A | 084.7540B | 084.8081C |
|---|---|---|---|---|
| 약식표시 | 84A | 84A1 | 84B | 84C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청약 및 계약일정, 분양가, 분양대금 납입일 등)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포기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산에 당첨자로 간주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샘플하우스에는 84A㎡, 84B㎡, 84C㎡ 주택형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이외 주택형은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84A | 84A1 | 84B | 84C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2 | 1 | 1 | 1 | 5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 0 | 0 | 0 | 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0 | 0 | 0 | 2 |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1 | 1 | 1 | 6 |
| | 장애인 | 4 | 1 | 1 | 1 | 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12 | 3 | 3 | 3 | 2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24 | 5 | 5 | 5 | 39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4 | 1 | 1 | 1 | 7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1 | 2 | 2 | 2 | 17 |
| 합 계 | | 64 | 14 | 14 | 14 | 10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 |

<table>
<tr><td></td><td>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br>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b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운용지침」[별표1]**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 |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3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1.26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

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509,453원~ 7,811,342원 | 7,622,057원~ 9,146,467원 | 8,040,493원~ 9,648,590원 | 8,701,640원~ 10,441,967원 | 9,362,787원~ 11,235,343원 | 10,023,934원~ 12,028,720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509,453원~ 9,113,233원 | 7,622,057원~ 10,670,878원 | 8,040,493원~ 11,256,689원 | 8,701,640원~ 12,182,295원 | 9,362,787원~ 13,107,900원 | 10,023,934원~ 14,033,506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811,343원~ 10,415,123원 | 9,146,468원~ 12,195,290원 | 9,648,591원~ 12,864,787원 | 10,441,968원~ 13,922,622원 | 11,235,344원~ 14,980,458원 | 12,028,721원~ 16,038,293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 [별표 3])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1.26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462,289원~ 10,415,123원 | 9,908,674원~ 12,195,290원 | 10,452,641원~ 12,864,787원 | 11,312,132원~ 13,922,622원 | 12,171,623원~ 14,980,458원 | 13,031,114원~ 16,038,293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 | | | | | | |
|---|---|---|---|---|---|---|---|---|
| | 1인 가구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신청자격요건</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br>※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br>▪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23.0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br>▪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td></tr>
<tr><td>청약신청 유의사항</td><td>▪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br>▪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br>▪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br>▪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br>▪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br>▪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br>-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br>-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한 자<br>▪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br>▪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br>▪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br>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br>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br>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br>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br>(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td></tr>
<tr><td>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td><td>▪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br>▪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br>▪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td><td>▪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br>▪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br>[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 |
|---|---|
| 기타(청약 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br>▪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br>▪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br>▪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br>▪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br>▪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br>▪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br>▪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60㎡초과 85㎡이하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 | |
|---|---|
| |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br>■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

| | |
|---|---|
| |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br>•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b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선정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로 선정하며, 정당당첨자 계약 이후 부적격 세대와 미계약 세대 등에 한해 동·호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4.02.05(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사업주체 분양홍보관(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br>-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 |
| 일반공급 | 1순위 | 2024.02.06(화) 09:00~17:30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3.02.07(수) 09: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br>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기관(정보보유기관)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br>•「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br>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br>(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br>신혼부부,<br>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br>생애최초 | • 일시: 2024.02.16.(금)<br>• 확인방법<br>-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2024.02.22.(목)~2024.02.25.(일)<br>(10:00~16:00)<br>• 장소: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br>※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 함.<br>※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 서류 제출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 일시<br>- 2024.02.27.(화)~2024.02.29.(목) (10:00~16:00)<br>• 장소<br>- 민락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br>(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4.02.16 (금) ~ 2024.02.25(일(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4.02.16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 | |
|---|---|
|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 2024.02.22.(목) ~ 2024.02.25.(일) 10:00~16:00까지 |
| 대상자 | • 특별공급, 일반공급 (1, 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제출 장소 | •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 2층(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 |
| 유의사항 |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분양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

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br>※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br>•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 | ○ | 해외 체류 증빙서류<br>해외근무자(단신부임)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br>-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관련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 본인 | •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br>•'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 |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 •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 한 경우 |
| | |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 비속 |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 | •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br>※ 기록대조일: 건강보험 가입 최초일로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 | ○ |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br>※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전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 | | ○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 •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br>※ 주민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br>•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 존속 |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 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 비속 | •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br>※ 기족대조일: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br>[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다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확인서) |
| | ○ |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br>※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홍보관 비치) |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전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 | | ○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 •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공급 (가점제)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br><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br>※ 주민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br>•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br>※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대리인 제출시 | ○ | | 위임장 | 청약자 | • 당사 분양홍보관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 |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기타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br>② 세무서(또는 홈택스), 해당직장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③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b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 ① 해당직장<br>② 세무서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날인) | ①,②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br>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재직증명서<br>※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해당직장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분양홍보관 비치<br>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분양홍보관<br>② 세무서 |
| 자산입증 서류목록 |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등기소/세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br>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br>② 해당직장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몇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원천징수영수증 포함)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직장<br>- 세무서<br>- 국세청 홈택스<br>-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br>※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 원본(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세 납부자)<br>※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 해당직장<br>- 세무서<br>- 국세청 홈택스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원본, 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1, 2022년에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해당여부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b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b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br>ⓒ 행정복지센터 |
| | 추가 (해당자) |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br>ⓕ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br>(*'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행정복지센터<br>ⓕ위택스, 이택스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br>ⓑ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 일정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4.02.27.(화)~2024.02.29.(목) 10:00~16:30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테넌바움294 분양홍보관(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 2층)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한 등)이 발생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본인 계약 시 |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 ○ | 자격 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 | ○ | | 인감증명서 |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용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계약금 입금증 | - 분양홍보관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증 |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 | 전자수입인지 사본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 | ○ | | 자금조달계획서 |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분양홍보관 비치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 | | 인감증명서(계약자)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br>-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br>-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br>-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 | ○ | | 인감도장(계약자) | |

| | | | | |
|---|---|---|---|---|
| | ○ | | 위임장(계약자) | |
| | ○ |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구매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서 샘플하우스 및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서 선납할인은 잔금에 대하여 입금일로부터 납부약정기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부산은행 | 101-2086-7028-03 | 주식회사 씨엘건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제출(분양홍보관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당첨세대 방문확인 계약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계약대상인 세대를 확인한 이후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계약체결하시기 이전에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동안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세대방문기간 : 2024.02.22.(금)~2024.02.25.(일) (시간 10:00~16:00)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으로 입주 전 단지 내에 개설되는 입주지원센터를 통하여 해당 세대를 임시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4년 03월 중(예정)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또는 잔금납부일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또는 잔금납부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잔금납부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8 발코니 확장 및 무상제공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구분 | 발코니 확장 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약식표기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84A, 84A1, 84B, 84C | 18,000,000 | 1,800,000 | 16,200,000 |

•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 등 기 시공된 제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변경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27.일 사용승인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기시공되었으며, 상기의 책정금액에도 불구하고 무상 제공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추가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무선 리모컨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 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기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추가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 용량은 실내기의 소요 용량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 이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자의 스탠드형 에어컨, 벽결이형 에어컨 설치를 고려한 매립냉매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9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샘플하우스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사업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분양 목적물 및 인접단지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샘플하우스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계획은 관계기관의 정책,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 및 구조물(송전탑, 전신주, 가로수,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공동구환기구, 변압기, 쓰레기처리장, 버스정류장 등)계획 및 현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 악취, 진동, 백연, 인근도로 통과차량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단지 인근에 다양한 개발사업 및 도로개선공사 등이 진행 중이므로 개발에 의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채광,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간섭 등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실제 마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지하 및 지상에는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해당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인터넷 등에 표현된 분양목적물의 평면, 치수, 면적, 건축물 마감 및 디자인, 사인, 도로, 조경 및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장에 방문하시어 실제 마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와 통합으로 사용하는 시설(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기계 관련시설 및 사용료 등)의 유지 보수는 타 용도와 공동으로 해야하며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한하여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입점자)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 미흡에 따른 자재 또는 시설, 제품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리 상 필요 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또는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천연석,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재가 가진 특성상의 문제일뿐 하자의 범위가 아닙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 상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상대적으로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미디어파사드, 우수조, 저수조, 세대 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경비실 및 시설별 주차 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량 변경, 위치 이동 등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차량 출입구(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외부 휴게공간, 파고라(teahouse), 어린이놀이터,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실외기, 도로 등과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저층부 세대 포함)는 소음(경보음, 상가이용자 및 기타 보행자에 의한 소음 포함), 냄새, 사생활 침해, 미관저하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사, 야간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민락공원과 인접하므로 인해 공원이용객들에 의한 일부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스카이라운지(테넌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테넌하우스)가 위치한 102동 1,2호 라인의 입주민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과 동일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접한 세대의 경우 층간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에 설치한 미디어파사드의 조명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경우 눈부심 현상 등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기울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욕실 슬리퍼 높이 차에 따른 걸림현상과 무관합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 계단실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물건 적치 등)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골조상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샘플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전동 전면부 입면 외벽에 부분적으로 설치되는 커튼월룩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등으로 특정시간대 인접한 세대 및 다른 주거지에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입주민 및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 피해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타동외벽, 옹벽 및 조경 등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파고라(teahouse),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 인정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등을 통해 위치를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비상차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 제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보일러 및 음식물저장소, 재활용집적소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2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근방 주동은 실외기실 설치 등으로 인해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B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2층,3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자동냉온풍기 시설의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발계획 예정도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공공시설,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 / 광고**
- 샘플하우스는 84㎡A, 84B㎡, 84C㎡타입을 공개하며, 그 외 미공개한 84㎡A1타입은 분양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상담 등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분양 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광고·홍보물이므로 본 단지 및 주변환경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영상은 샘플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 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샘플하우스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모형 등에 표현된 외벽 디자인 및 입면의 줄눈형태, 입면 마감재의 입면 돌출, 표현, 재료, 색채 등은 실제 준공된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는 2025년 12월까지 공개한 후 폐쇄할 예정이나, 향후 분양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 공개세대,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샘플하우스 내에는 기본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사용승인 완료한 세대에는 샘플하우스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 및 당첨자는 사전에 계약 및 당첨세대를 확인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의 TV 설치 방식은 연출용이며, 입주 후 실사용 시 전원, 통신, TV용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그에 따라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평면도 등 CG 표현물은 전 평형 발코니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샘플하우스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01동 202,203,205호의 경우 타 세대와 마감자재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아파트 2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 동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 후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및 도로(단지 및 주변현황)

- 단지 주변 전기시설물(한전패드 등), 가로등, 가로수, 자전거보관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옥외소화전 등의 위치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공개공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옹벽,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이 되며, 점용료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등)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 및 옥탑 미디어파사드,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침, 야간조명 효과, BI, 동표시 사인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 내부창호 포함)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연 및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본 단지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일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휀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냄새, 진동,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택배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 경사로에 경고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 접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 세대 창호에 접합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충격 시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주이후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 및 무인택배보관함 등은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높이 2.3m 초과 차량의 통행이 불가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동 계획**
- 각동의 엘리베이터는 인허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호수라인별로 인승 또는 운행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 공용부의 채광, 환기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동은 코어당 여러 호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 세대들을 연결하며, 아파트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출입구와 코어와의 거리는 차이가 있음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 및 공용 홀은 동별로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여 출입문이나 홀의 크기, 구조,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실 등은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폐박스, 쓰레기봉투, 자전거, 유모차 등 기타 각종 개인물품의 적치가 불가합니다.
- 지상1층 무인택배보관함, 우편물보관함 등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설치되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 옥탑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조명 및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공간에 설치된 제연휀룸, 실외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기계장비 설치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일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2호 입주자는 스카이라운지(테넌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테넌하우스)의 이용객과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행 및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관 계획**
- 주동 외부와 옥상에 미디어파사드, 커튼월룩, 라인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디자인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주동 외벽의 마감재가 상이하고, 외부 석재마감 및 커튼월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 눈부심, 소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콘크리트난간 혹은 난간 등으로 설치하였으며, 적용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B3~B1층 외부 석가산 마감 및 지상층 조경, 조명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 눈부심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는 건물형태 및 돌출 구조물로 인한 선홈통, 가스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로 우수배관, 가스배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계획**
- 아파트 입주민,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는 해당 시설 각각의 주차구역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이용 중 각종마감 등의 파손시 하자보수가 되지 않으며,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의 경우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시설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법적개소 이상 계획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수량과 동·층별 배분계획,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중 화재시 소방시설에 의한 차량손상분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해당 천정고를 초과하는 높이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101동 배면부분에 재활용집적소 및 음식물저장소가 설치되어 관할구청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 및 정차로 인한 소음, 냄새, 주차장 사용,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택배차량 및 배달오토바이의 출입으로 소음, 냄새, 정차,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차량 주출입구에 차수벽이 설치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본 건축물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치 | 102동 38층 | 지상1층 | 지하1층 | 지하1층 |
|---|---|---|---|---|
| 시설명 | 스카이라운지(테넌라운지), 게스트하우스(테넌하우스) | 어린이놀이터 | 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실 |
| 시설수 | 각 1개소 | 1개소 | 1개소 | 1개소 |

- 단지의 내부에는 주민공동시설(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동호수 인근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테넌라운지), 게스트하우스(테넌하우스), 관리사무소)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휀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된 시설물(공용부 경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야간에 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가로등, 외부사인조명 및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 및 기본 집기류만 제공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샘플하우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본 단지 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전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공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오니, 계약 전 운영방식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되었으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시설, 용도, 마감 등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1층 엘리베이터 홀 일부구간은 석재(사비석 혹두기), 돌출부위가 있으므로 통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제기 및 마감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 및 카달로그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상1층 공용홀 자동냉온풍기 시설의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

- 근린생활시설 B2,B1층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 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경**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야간조명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사용승인도면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레벨 차이가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출입구, 차량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재활용집적소, 음식물저장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민락공원 등산객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 아파트 재활용집적소 및 음식물저장소, 근린생활시설용 재활용집적소의 설치로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종류, 형태, 재질, 색채 등을 심의받아 설치되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주변개발계획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조경에 코르텐강이 설치되어 기대거나 만질 시 녹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일반사항**

- 고층 세대의 경우 측면 및 상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 외벽 사인물 등으로 시야간섭이나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계획

- 본 아파트는 세대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계약 세대가 속한 동・층・향별 차이, 주변 개발행위 등의 변화, 계절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샘플하우스의 조망과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하부 필로티 인근 저층세대는 필로티 내·외 휴게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바닥 난방 효율이 기준층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샘플하우스와 달리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추후 별도설치를 위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콘센트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설치가능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타입, 호수별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욕실, 다용도실 등의 단차부위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거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으나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배관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었으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이나 액세서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 및 에어컨 실내기, 자연환기식, 환기구, 욕실팬, 온수분배기, 각종 배수구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샘플하우스에 설치되는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과 다르게 설치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 외부를 조망하는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 84A타입의 경우 세대 내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그외 타입의 경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의 생활환경 및 주기적인 실내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자연환기식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물품적재 등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어있는 자재의 경우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시간, 장소별 조도 및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주방가구 및 욕조 하부, 샤워실, 비확장 발코니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냉방은 세대별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수량 및 용량 등은 타입, 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발코니에 전동 빨래 건조대(리모컨 타입, 조명 일체형)가 설치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 101,102동 저층 세대의 경우 광안해변로 및 민락본동로 방향으로 방음벽, 단지 앞 타 건물로 인한 조망 및 소음으로 인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타일 마감으로 인해 액자 및 장식품 등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
- 내·외부 창호 디자인, 난간,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크기, 개폐방향 등은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101동 202,203,205호 및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샘플하우스 및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샘플하우스 및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슬라이딩 도어는 제품 특성상 도어와 벽체 사이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 기밀성능이 없는 제품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중문 슬라이딩 도어는 개별적인 속도조절은 불가능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크기,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거실 및 주방벽체 타일 이음새에 줄눈시공이 되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만 코킹이 시공되오니 샘플하우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 수납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벽 및 상하부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주택형별, 위치별로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 및 타일 등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된 아일랜드장은 위치를 옮길 경우 전기 배관 및 전선이 바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주방가구, 시스템 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 스위치로 소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소방 설비 (공용설비 및 시스템)**

- 아파트 난방은 각 세대 내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1에 설치되어 보일러의 유지보수를 위해 세탁기, 건조기 등 입주자가 개별 설치한 가전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실외기, 보일러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온수분배기는 씽크장 하부, 급수급탕분배기는 하부 세대 욕실천정에 설치되고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은 신발장 또는 현관창고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주택형별, 배치별로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주거시설 입주자와 비주거시설 입주자(입점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되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수뢰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자(입점자)가 임의로 냉·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무선 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인덕션 방식의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전기쿡탑 사용 시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리용기에 인덕션용 표시가 있더라도 도자기질 재질 또는 자성이 약한 용기의 경우 조리가 되지 않거나 전기쿡탑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가스보일러를 사용을 위하여 설치되며, 가스쿡탑 사용을 고려한 가스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스쿡탑 사용시에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쿡탑까지 연결되는 가스배관 공사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욕실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합니다.
- 개수대 하부장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세대 내 피난공간 내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설치공간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2(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2F~최상층), 2F세대는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을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파고라(teahouse) 운영 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정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위치별로 일부 높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2.3m | 2.3m |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

- 내진등급 : 1등급, 내진설계능력 MMI 진도 : Ⅶ / 최대지반가속도 : 0.253g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 구분 | 건축/토목/기계감리 | 전기/통신/소방감리 |
|---|---|---|
| 회사명 | ㈜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세종기술단 |
| 금액 | 1,324,240,000 | 524,69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호 | ㈜씨엘건설 | ㈜협성건설 |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08, 112동 204호(부암동,협성피닉스타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6층(부암동,협성프라자) |
| 법인등록번호 | 180111-1101566 | 180111-0739376 |

■ **홈페이지 : https://www.테넌바움294.com**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23

■ **분양문의 :** ☎ 051-757-2940